|  |  |  |
| --- | --- | --- |
| **오염배출허가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736호  <오염배출허가 관리조례>는 2020년 12월 9일 국무원 제117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였기에 이를 공포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21년 1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오염배출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오염배출행위를 규범화 하며, 오염물 배출 제어,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법률 규정에 의거 오염배출허가 관리를 실행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오염배출단위’)는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오염물 발생량, 배출량 또는 환경에 대한 영향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오염배출단위에 대한 오염배출허가 분류 관리를 실행한다.  2.1 오염물 발생량, 배출량 또는 환경에 대한 영향정도가 비교적 큰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배출허가 중점 관리를 실행한다.  2.2 오염물 발생량, 배출량 또는 환경에 대한 영향정도가 비교적 적은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배출허가 간소화 관리를 실행한다.  오염배출허가 관리를 실행하는 오염배출단위 범위, 실시 단계와 관리 유형별 명단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입안하고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포 및 실시한다. 오염배출허가 관리를 실행하는 오염배출단위 범위, 실시 단계와 관리 유형별 명단을 제정할 경우 유관부처, 업종 협회, 기업/사업단위와 사회 대중 등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3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전국 오염배출허가의 통일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구(區)에 설치된 시급(市級)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오염배출허가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 구축과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배출허가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 심사와 결정, 정보공개 등은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제5조** 구(區)에 설치된 시급(市級) 이상 인민정부는 오염배출허가증 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비준**  **제6조** 오염배출단위는 그 생산경영장소 소재지 구(區)에 설치된 시급(市級)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서(이하 ‘심사비준부처’)에 오염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오염배출단위가 2개 이상의 생산경영장소에서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생산경영장소별로 오염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제7조** 오염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한 경우,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오염배출허가증 신청표를 제출하거나 서한 등의 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염배출허가증 신청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1 오염배출단위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생산경영장소 소재지,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정보  7.2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보고서(표) 비준문건 또는 환경영향등기표 비안 자료  7.3 오염물 배출구, 주요생산시설 또는 작업현장, 공장 경계에 따라 신청한 오염물 배출종류, 배출농도와 배출량, 집행하는 오염물 배출기준과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제어 지표  7.4 오염방지시설, 오염물 배출구 위치와 수량, 오염물 배출방식, 배출방향,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정보  7.5 주요 생산시설, 주요 제품 및 생산능력, 주요 원부자재, 오염물 발생과 배출 과정 등 정보 및 상업기밀 관련 여부 등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의 설명  **제8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오염배출허가증 신청 및 취득 시에 상응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8.1 오염배출허가 중점관리 실행에 속하는 경우, 오염배출단위는 신청서 제출 전 전국 오염배출허가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단위 기본정보 및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사항을 공개한 설명자료  8.2 성진(城鎭, 도시와 읍)과 공업오수 집중처리시설에 속하는 경우, 오염배출단위의 오염수용치 범위, 파이프 네트워크 배치, 최종 배출방향 등의 설명자료  8.3 중점오염물을 배출하는 신축, 개축, 증축 프로젝트에 속하거나 기술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 오염배출단위가 오염물 배출량 감축 대체를 통해 얻게 되는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제어 지표의 설명자료  **제9조** 심사비준부처는 접수한 오염배출허가증 신청에 대해 아래 상황에 맞춰 각각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9.1 법에 의거 오염배출허가증 신청 및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오염배출허가증 신청 및 취득이 불필요함을 고지해야 한다.  9.2 본 심사비준부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즉시 불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오염배출단위에 심사비준 권한을 가진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9.3 신청자료에 현장에서 수정가능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배출단위가 현장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9.4 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합법적인 형식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현장 또는 3일내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오염배출단위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1회성으로 고지하고, 기한을 넘겨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9.5 본 심사비준부처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완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형식에 부합할 경우이거나 또는 오염배출단위가 요구에 따라 모든 신청자료를 수정 보완한 경우에는 수리해야 한다.  심사비준부처는 전국 오염배출 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 상에 오염배출허가증 신청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공개하고, 동시에 오염배출단위에 본 심사비준부처의 전용 인감을 날인하고 일자를 명기한 서면 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 심사비준부처는 오염배출단위가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또한 오염배출단위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심사비준부처는 기술기구를 조직해 오염배출허가증 신청자료에 대한 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기술기구는 제출한 기술평가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염배출단위에게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아래 조건이 구비된 오염배출단위에 대해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한다.  11.1 법에 의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보고서(표) 비준문건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이미 환경영향등기표 비안 수속을 처리한 경우  11.2 오염물 배출이 오염물 배출기준 요구에 부합하고, 중점 오염물 배출이 오염배출 허가증 신청과 심사발급 기술규범, 환경영향보고서(표) 비준문건,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제어 요구에 부합할 경우, 그 중 오염배출단위 생산경영장소가 국가환경 품질기준의 중점구역 및 유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유관 지방인민정부의 생태환경 품질 개선에 관한 특별요구에도 부합해야 함  11.3 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해 허용된 오염배출농도 요구에 도달할 수 있거나 오염방지 타당성 기술에 부합한 경우  11.4 자체 모니터링 방안의 모니터링 위치, 지표, 횟수 등이 국가 자체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할 경우  **제12조** 오염배출허가 간소화 관리를 실행하는 오염배출단위에 대하여 심사비준부처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 심사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해 줄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오염배출허가 중점관리를 실행하는 오염배출단위에 대해 심사비준부처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내 심사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내 심사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해 줄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심사비준부처는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통일된 오염배출 허가증 일련번호를 생성해야 한다.  **제13조** 오염배출허가증 상 아래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13.1 오염배출단위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생산경영장소 소재지 등  13.2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일, 증서번호 및 QR코드 등  13.3 오염물 발생 및 배출 과정, 오염방지시설 등  13.4 오염물 배출구 위치와 수량, 오염물 배출방식과 배출방향 등  13.5 오염물 배출종류, 허용 배출농도, 허용 배출량 등  13.6 오염방지시설 운행과 유지 요구, 오염물 배출구 규범화 건설 요구 등  13.7 특수시간대에 오염물 배출 금지 또는 제한의 요구  13.8 자체 모니터링, 환경관리 대장 기록, 오염배출허가증 집행 보고 내용과 횟수 등 요구  13.9 오염배출단위 환경정보 공개 요구  13.10 대기오염물 무(無)조직 배출 상황이 존재할 경우의 무(無)조직 배출 제어 요구  13.11 법률, 법규에서 정한 오염배출단위가 준수해야 할 기타 오염물 배출 제어 요구  **제14조**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오염배출단위가 계속하여 오염물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 심사비준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비준부처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장불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오염배출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 심사비준부처에 오염배출허가증 변경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내 오염배출단위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오염배출허가증을 새로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15.1 오염물을 배출하는 신축, 개축, 증축 프로젝트  15.2 생산경영장소, 오염물 배출구 위치 또는 오염물 배출방식, 배출방향 변동  15.3 오염물 배출구 수량 또는 오염물 배출종류, 배출량, 배출농도 증가  **제16조** 오염배출단위에 적용하는 오염물 배출기준, 중점 오염물 총량 제어 요구가 변동되어 오염배출허가증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비준부처는 법에 의거 오염배출허가증에 상응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오염배출 관리**  **제17조** 오염배출허가증은 오염배출단위에 대한 생태환경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주요 근거이다.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을 준수하고, 생태환경 관리요구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을 운영 및 보수해야 하며, 환경관리제도를 구축해 오염물 배출을 엄격히 제어해야 한다.  **제18조** 오염배출단위는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규범화된 오염물 배출구를 건설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구의 위치와 수량 및 오염물 배출방식과 배출방향은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신축, 개축, 증축 프로젝트와 기술개조를 실시한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방지설비를 건설하는 동시에 규범화된 오염물 배출구를 건설해야 한다.  **제19조**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배출허가증 규정과 유관 표준규범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전개하고, 모니터링 원시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모니터링 원시기록의 보존기한은 5년 이상이여야 한다.  오염배출단위는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위∙변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오염배출허가 중점 관리를 실행하는 오염배출단위는 법에 의거하여 오염물 배출 자동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사용, 유지해야 하며,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킹 해야 한다.  오명배출단위는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가 전송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적시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보고해 검사와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  **제21조** 오염배출단위는 환경관리 대장기록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오염배출허가증 규정된 양식, 내용과 횟수에 따라 주요 생산설비과 오염방지설비의 운행상황 및 오염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환경관리 대장기록의 보존기한은 5년 이상이여야 한다.  오염배출단위가 오염물 배출이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항을 발견했을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해 피해 상황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환경관리 대장기록을 사실 대로 진행하여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보고 및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 상황에서의 오염물 배출은 오염물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량에 산입한다.  **제22조**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배출허가증에 규정된 내용, 횟수와 기간 요구에 따라 심사비준부서에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를 제출하고, 오염물 배출행위, 배출농도, 배출량 등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한 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에 오염물 배출 변동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에 보고한 오염물 배출량은 연간 생태환경 통계, 중점오염물 배출총량 심사, 오염원 배출리스트 작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23조** 오염배출단위는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오염물 배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 정보는 오염물 배출종류, 배출농도와 배출량 및 오염방지시설의 건설 운행상황,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포함해야 하고, 그 중에서 수질 오염물이 시정(市政, 도시행정) 배수관에 흘러갈 경우, 오수가 시정 배수관에 연결되는 위치, 배출방식 등의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제24조** 오염물 발생량, 배출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모두 적은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염배출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나 오염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할 필요는 없다.  오염배출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 범위 명단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서 제정 및 발표한다. 오염배출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 범위 명단을 제정할 경우 유관부처, 업종 협회, 기업/사업단위와 사회 대중 등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오염배출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기본정보, 오염물 배출방향, 집행하는 오염물 배출기준 및 도입한 오염방지조치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기재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내에 변경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감독검사**  **제25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오염배출허가에 대한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오염배출허가 법 집행 검사를 생태환경 법 집행 연간계획에 포함시켜 오염배출허가 관리 유형, 오염배출단위 신용기록과 생태환경관리 필요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검사 횟수와 검사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전국 오염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서 법 집행 검사기간, 내용, 결과 및 처벌 결정을 기록하는 동시에 처벌 결정을 국가 유관 신용정보 시스템에 포함시켜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26조** 오염배출단위는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여 요구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 환경관리 대장기록,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의 위조, 변조, 양도는 금지한다.  **제27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오염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오염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농도가 허용배출농도를 초과한 것을 발견했을 경우, 오염배출단위에 오염배출허가증, 환경관리 대장기록,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을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행정 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 및 오염배출단위의 오염배출허가증, 환경관리 대장기록, 오염배출허가 집행보고,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오염배출단위가 정해진 주기(周期)내의 오염물 배출량 및 오염배출단위의 오염방지시설 운행과 유지보수가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제29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현장 모니터링, 오염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 자체 모니터링 설비,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얻은 오염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 데이터는 오염물 배출농도가 허용배출농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오염배출단위의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와 생태환경 주관부서 및 그 소속 모니터링 기구가 행정 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 및 그 소속 모니터링 기구가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행정 법 집행 근거로 삼는다.  **제30조** 국가는 오염배출단위가 오염방지 타당성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오염방지 타당성 기술 가이드를 제정하여 공포한다.  오염배출단위가 오염방지 타당성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오염배출허가증, 환경관리 대장기록,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 자체 모니터링 데이터 등 관련 자료와 생태환경 주관부서 및 그 소속 모니터링 기구가 행정 법 집행과정에서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에 근거하여 오염배출단위가 도입한 오염방지기술이 배출허가증 규정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검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오염방지 타당성 기술 가이드를 제정할 때 반드시 유관부처, 업종 협회, 기업/사업단위와 사회 대중 등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31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라도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 규정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생태환경 주관부서에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신고를 접수한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피드백 해주고, 신고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오염배출허가증 심사비준 또는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32.1 적법한 조건에 부합하는 오염배출허가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법정기한 내에 심사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32.2 적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배출단위에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2.3 심사비준권한을 위반하여 오염배출허가증을 심사비준한 경우  32.4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경우  32.5 법에 근거하여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33조**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시정 또는 생산 제한, 생산 중단 및 정돈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조업중단 및 폐쇄를 명령한다.  33.1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3.2 오염배출허가증 유효기간 만료되었으나 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장 신청하였으나 비준을 받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3.3 법에 의거하여 오염배출허가증을 철회, 말소, 직권취소 된 후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3.4 법에 의거하여 오염배출허가증을 새로 신청하여 취득해야 하나 오염배출허가증을 다시 신청하여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34조**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에서 시정 또는 생산 제한, 생산 중단 및 정돈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오염배출허가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조업중단 및 폐쇄를 명령한다.  34.1 허용배출농도, 허용배출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4.2 암관, 침출수, 갱도,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변조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등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오염물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제35조**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산 제한, 생산 중단 및 정돈을 명령한다.  35.1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 무(無)조직 배출을 제어하지 않은 경우  35.2 특수시간대에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을 중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산중단 및 정돈을 명령한다.  36.1 오염물 배출구 위치나 수량이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6.2 오염물 배출방식이나 배출방향이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6.3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훼손, 임의로 이동 또는 변경하는 경우  36.4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및 사용하지 않고,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설비와 네트워킹 하지 않거나 또는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증하지 못한 경우  36.5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하여 자동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36.6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원시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6.7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36.8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 전송 데이터의 비정상 또는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배출 등 이상(異常)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36.9 법률, 법규가 정한 오염물 배출 제어에 관한 기타 요구를 위반하는 행위  **제37조**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매회당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37.1 환경관리 대장기록 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기록하지 않는 경우  37.2 주요 생산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운행 상황이나 오염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37.3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7.4 오염물 배출행위나 오염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해 오염물을 배출하여 벌금 처벌을 받고,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재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해당 위법행위가 계속하여 실시되거나 재검사를 거절, 방해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규정에 의거하여 일(日) 단위로 연속 처벌한다.  **제39조** 오염배출단위가 생태환경 주관부서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감독검사를 허위 날조하여 받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오염배출단위가 사기, 뇌물 등 정당하지 않는 수단으로 오염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한 경우, 심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해당 오염배출허가증을 취소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년내 오염배출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배출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관련 증서를 몰수하거나 오염배출허가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3년내 오염배출허가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2조** 심사비준부서의 위탁을 받은 오염배출허가 기술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날조하는 경우 심사비준부서가 위탁관계를 해제하고, 관련 정보를 신용기록에 남기고, 전국 오염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알림과 동시에 국가 유관 신용정보시스템에 올려 사회에 공개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오염배출허가 기술서비스 종사를 금지한다.  **제43조** 오염배출등기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책임자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4조** 오염배출단위가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한 처벌 이외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구류형에 처한다.  44.1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하여 오염물 배출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44.2 암관, 침출수, 갱도,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변조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제45조** 본 조례 규정의 위반이 치안관리 위반행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6조**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오염물을 실제 배출하고 있는 오염배출단위가 본 조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정돈을 진행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오염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염물을 계속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정돈 기간 중,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해당 오염배출단위에 오염물 배출기한 내 정돈하도록 통지서를 발송하고 정돈 내용 및 정돈 기간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해야한다.  **제47조** 오염배출허가증 신청표, 환경관리 대장기록, 오염배출허가증 집행보고 등 문건의 양식과 내용에 대한 요구 및 오염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 기술규범 등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48조**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국가기밀과 관련된 경우, 오염배출허가, 감독관리 등은 비밀유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9조** 비행기, 선박, 자동차, 열차 등 이동오염원 관련 오염물 배출관리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오염배출단위는 안전생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생산 관리 요구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을 운행 및 유지보수하고 안전생산 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오염방지시설을 운행 및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안전생산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생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임이 있는 오염배출단위를 처벌한다.  **제51조** 본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排污许可管理条例**  国务院令第736号  《排污许可管理条例》已经2020年12月9日国务院第117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1年3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21年1月24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排污许可管理，规范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排污行为，控制污染物排放，保护和改善生态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等有关法律，制定本条例。  **第二条**　依照法律规定实行排污许可管理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称排污单位），应当依照本条例规定申请取得排污许可证；未取得排污许可证的，不得排放污染物。  根据污染物产生量、排放量、对环境的影响程度等因素，对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分类管理：  （一）污染物产生量、排放量或者对环境的影响程度较大的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  （二）污染物产生量、排放量和对环境的影响程度都较小的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简化管理。  实行排污许可管理的排污单位范围、实施步骤和管理类别名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拟订并报国务院批准后公布实施。制定实行排污许可管理的排污单位范围、实施步骤和管理类别名录，应当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社会公众等方面的意见。  **第三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全国排污许可的统一监督管理。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排污许可的监督管理。  **第四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加强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建设和管理，提高排污许可在线办理水平。  排污许可证审查与决定、信息公开等应当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办理。  **第五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排污许可管理工作所需经费列入本级预算。  **第二章　申请与审批**  **第六条**　排污单位应当向其生产经营场所所在地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以下称审批部门）申请取得排污许可证。  排污单位有两个以上生产经营场所排放污染物的，应当按照生产经营场所分别申请取得排污许可证。  **第七条**　申请取得排污许可证，可以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提交排污许可证申请表，也可以通过信函等方式提交。  排污许可证申请表应当包括下列事项：  （一）排污单位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生产经营场所所在地、统一社会信用代码等信息；  （二）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表）批准文件或者环境影响登记表备案材料；  （三）按照污染物排放口、主要生产设施或者车间、厂界申请的污染物排放种类、排放浓度和排放量，执行的污染物排放标准和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  （四）污染防治设施、污染物排放口位置和数量，污染物排放方式、排放去向、自行监测方案等信息；  （五）主要生产设施、主要产品及产能、主要原辅材料、产生和排放污染物环节等信息，及其是否涉及商业秘密等不宜公开情形的情况说明。  **第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申请取得排污许可证还应当提交相应材料：  （一）属于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在提出申请前已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公开单位基本信息、拟申请许可事项的说明材料；  （二）属于城镇和工业污水集中处理设施的，排污单位的纳污范围、管网布置、最终排放去向等说明材料；  （三）属于排放重点污染物的新建、改建、扩建项目以及实施技术改造项目的，排污单位通过污染物排放量削减替代获得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说明材料。  **第九条**　审批部门对收到的排污许可证申请，应当根据下列情况分别作出处理：  （一）依法不需要申请取得排污许可证的，应当即时告知不需要申请取得排污许可证；  （二）不属于本审批部门职权范围的，应当即时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排污单位向有审批权的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  （三）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应当允许排污单位当场更正；  （四）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的，应当当场或者在3日内出具告知单，一次性告知排污单位需要补正的全部材料；逾期不告知的，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视为受理；  （五）属于本审批部门职权范围，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或者排污单位按照要求补正全部申请材料的，应当受理。  审批部门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开受理或者不予受理排污许可证申请的决定，同时向排污单位出具加盖本审批部门专用印章和注明日期的书面凭证。  **第十条**　审批部门应当对排污单位提交的申请材料进行审查，并可以对排污单位的生产经营场所进行现场核查。  审批部门可以组织技术机构对排污许可证申请材料进行技术评估，并承担相应费用。  技术机构应当对其提出的技术评估意见负责，不得向排污单位收取任何费用。  **第十一条**　对具备下列条件的排污单位，颁发排污许可证：  （一）依法取得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表）批准文件，或者已经办理环境影响登记表备案手续；  （二）污染物排放符合污染物排放标准要求，重点污染物排放符合排污许可证申请与核发技术规范、环境影响报告书（表）批准文件、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要求；其中，排污单位生产经营场所位于未达到国家环境质量标准的重点区域、流域的，还应当符合有关地方人民政府关于改善生态环境质量的特别要求；  （三）采用污染防治设施可以达到许可排放浓度要求或者符合污染防治可行技术；  （四）自行监测方案的监测点位、指标、频次等符合国家自行监测规范。  **第十二条**　对实行排污许可简化管理的排污单位，审批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审批决定；对符合条件的颁发排污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对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审批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作出审批决定；需要进行现场核查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日内作出审批决定；对符合条件的颁发排污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不予许可并书面说明理由。  审批部门应当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生成统一的排污许可证编号。  **第十三条**　排污许可证应当记载下列信息：  （一）排污单位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生产经营场所所在地等；  （二）排污许可证有效期限、发证机关、发证日期、证书编号和二维码等；  （三）产生和排放污染物环节、污染防治设施等；  （四）污染物排放口位置和数量、污染物排放方式和排放去向等；  （五）污染物排放种类、许可排放浓度、许可排放量等；  （六）污染防治设施运行和维护要求、污染物排放口规范化建设要求等；  （七）特殊时段禁止或者限制污染物排放的要求；  （八）自行监测、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的内容和频次等要求；  （九）排污单位环境信息公开要求；  （十）存在大气污染物无组织排放情形时的无组织排放控制要求；  （十一）法律法规规定排污单位应当遵守的其他控制污染物排放的要求。  **第十四条**　排污许可证有效期为5年。  排污许可证有效期届满，排污单位需要继续排放污染物的，应当于排污许可证有效期届满60日前向审批部门提出申请。审批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完成审查；对符合条件的予以延续，对不符合条件的不予延续并书面说明理由。  排污单位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应当自变更之日起30日内，向审批部门申请办理排污许可证变更手续。  **第十五条**　在排污许可证有效期内，排污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重新申请取得排污许可证：  （一）新建、改建、扩建排放污染物的项目；  （二）生产经营场所、污染物排放口位置或者污染物排放方式、排放去向发生变化；  （三）污染物排放口数量或者污染物排放种类、排放量、排放浓度增加。  **第十六条**　排污单位适用的污染物排放标准、重点污染物总量控制要求发生变化，需要对排污许可证进行变更的，审批部门可以依法对排污许可证相应事项进行变更。  **第三章　排污管理**  **第十七条**　排污许可证是对排污单位进行生态环境监管的主要依据。  排污单位应当遵守排污许可证规定，按照生态环境管理要求运行和维护污染防治设施，建立环境管理制度，严格控制污染物排放。  **第十八条**　排污单位应当按照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建设规范化污染物排放口，并设置标志牌。  污染物排放口位置和数量、污染物排放方式和排放去向应当与排污许可证规定相符。  实施新建、改建、扩建项目和技术改造的排污单位，应当在建设污染防治设施的同时，建设规范化污染物排放口。  **第十九条**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和有关标准规范，依法开展自行监测，并保存原始监测记录。原始监测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5年。  排污单位应当对自行监测数据的真实性、准确性负责，不得篡改、伪造。  **第二十条**　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应当依法安装、使用、维护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并与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  排污单位发现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的，应当及时报告生态环境主管部门，并进行检查、修复。  **第二十一条**　排污单位应当建立环境管理台账记录制度，按照排污许可证规定的格式、内容和频次，如实记录主要生产设施、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以及污染物排放浓度、排放量。环境管理台账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5年。  排污单位发现污染物排放超过污染物排放标准等异常情况时，应当立即采取措施消除、减轻危害后果，如实进行环境管理台账记录，并报告生态环境主管部门，说明原因。超过污染物排放标准等异常情况下的污染物排放计入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量。  **第二十二条**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的内容、频次和时间要求，向审批部门提交排污许可证执行报告，如实报告污染物排放行为、排放浓度、排放量等。  排污许可证有效期内发生停产的，排污单位应当在排污许可证执行报告中如实报告污染物排放变化情况并说明原因。  排污许可证执行报告中报告的污染物排放量可以作为年度生态环境统计、重点污染物排放总量考核、污染源排放清单编制的依据。  **第二十三条**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如实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开污染物排放信息。  污染物排放信息应当包括污染物排放种类、排放浓度和排放量，以及污染防治设施的建设运行情况、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其中，水污染物排入市政排水管网的，还应当包括污水接入市政排水管网位置、排放方式等信息。  **第二十四条**　污染物产生量、排放量和对环境的影响程度都很小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填报排污登记表，不需要申请取得排污许可证。  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范围名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并公布。制定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范围名录，应当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社会公众等方面的意见。  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填报基本信息、污染物排放去向、执行的污染物排放标准以及采取的污染防治措施等信息；填报的信息发生变动的，应当自发生变动之日起20日内进行变更填报。  **第四章　监督检查**  **第二十五条**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加强对排污许可的事中事后监管，将排污许可执法检查纳入生态环境执法年度计划，根据排污许可管理类别、排污单位信用记录和生态环境管理需要等因素，合理确定检查频次和检查方式。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记录执法检查时间、内容、结果以及处罚决定，同时将处罚决定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统向社会公布。  **第二十六条**　排污单位应当配合生态环境主管部门监督检查，如实反映情况，并按照要求提供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  禁止伪造、变造、转让排污许可证。  **第二十七条**　生态环境主管部门可以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监控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情况，发现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浓度超过许可排放浓度的，应当要求排污单位提供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进行核查，必要时可以组织开展现场监测。  **第二十八条**　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行政执法过程中收集的监测数据，以及排污单位的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对排污单位在规定周期内的污染物排放量，以及排污单位污染防治设施运行和维护是否符合排污许可证规定进行核查。  **第二十九条**　生态环境主管部门依法通过现场监测、排污单位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获得的排污单位污染物排放数据，可以作为判定污染物排放浓度是否超过许可排放浓度的证据。  排污单位自行监测数据与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所属监测机构在行政执法过程中收集的监测数据不一致的，以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所属监测机构收集的监测数据作为行政执法依据。  **第三十条**　国家鼓励排污单位采用污染防治可行技术。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并公布污染防治可行技术指南。  排污单位未采用污染防治可行技术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根据排污许可证、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自行监测数据等相关材料，以及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所属监测机构在行政执法过程中收集的监测数据，综合判断排污单位采用的污染防治技术能否稳定达到排污许可证规定；对不能稳定达到排污许可证规定的，应当提出整改要求，并可以增加检查频次。  制定污染防治可行技术指南，应当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社会公众等方面的意见。  **第三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对排污单位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均有向生态环境主管部门举报的权利。  接到举报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依法处理，按照有关规定向举报人反馈处理结果，并为举报人保密。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生态环境主管部门在排污许可证审批或者监督管理中有下列行为之一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对符合法定条件的排污许可证申请不予受理或者不在法定期限内审批；  （二）向不符合法定条件的排污单位颁发排污许可证；  （三）违反审批权限审批排污许可证；  （四）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  （五）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其他行为。  **第三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一）未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  （二）排污许可证有效期届满未申请延续或者延续申请未经批准排放污染物；  （三）被依法撤销、注销、吊销排污许可证后排放污染物；  （四）依法应当重新申请取得排污许可证，未重新申请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  **第三十四条**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排污许可证，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一）超过许可排放浓度、许可排放量排放污染物；  （二）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法排放污染物。  **第三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  （一）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控制大气污染物无组织排放；  （二）特殊时段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停止或者限制排放污染物。  **第三十六条**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  （一）污染物排放口位置或者数量不符合排污许可证规定；  （二）污染物排放方式或者排放去向不符合排污许可证规定；  （三）损毁或者擅自移动、改变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  （四）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安装、使用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并与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或者未保证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正常运行；  （五）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制定自行监测方案并开展自行监测；  （六）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保存原始监测记录；  （七）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公开或者不如实公开污染物排放信息；  （八）发现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或者污染物排放超过污染物排放标准等异常情况不报告；  （九）违反法律法规规定的其他控制污染物排放要求的行为。  **第三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每次5千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法律另有规定的，从其规定：  （一）未建立环境管理台账记录制度，或者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记录；  （二）未如实记录主要生产设施及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或者污染物排放浓度、排放量；  （三）未按照排污许可证规定提交排污许可证执行报告；  （四）未如实报告污染物排放行为或者污染物排放浓度、排放量。  **第三十八条**　排污单位违反本条例规定排放污染物，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的，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组织复查，发现其继续实施该违法行为或者拒绝、阻挠复查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按日连续处罚。  **第三十九条**　排污单位拒不配合生态环境主管部门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条**　排污单位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申请取得排污许可证的，由审批部门依法撤销其排污许可证，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3年内不得再次申请排污许可证。  **第四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伪造、变造、转让排污许可证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没收相关证件或者吊销排污许可证，处10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3年内不得再次申请排污许可证。  **第四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接受审批部门委托的排污许可技术机构弄虚作假的，由审批部门解除委托关系，将相关信息记入其信用记录，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布，同时纳入国家有关信用信息系统向社会公布；情节严重的，禁止从事排污许可技术服务。  **第四十三条**　需要填报排污登记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未依照本条例规定填报排污信息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四条**　排污单位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除依照本条例规定予以处罚外，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处以拘留：  （一）未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被责令停止排污，拒不执行；  （二）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法排放污染物。  **第四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　则**  **第四十六条**　本条例施行前已经实际排放污染物的排污单位，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应当在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的期限内进行整改，达到本条例规定的条件并申请取得排污许可证；逾期未取得排污许可证的，不得继续排放污染物。整改期限内，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向其下达排污限期整改通知书，明确整改内容、整改期限等要求。  **第四十七条**　排污许可证申请表、环境管理台账记录、排污许可证执行报告等文件的格式和内容要求，以及排污许可证申请与核发技术规范等，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  **第四十八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涉及国家秘密的，其排污许可、监督管理等应当遵守保密法律法规的规定。  **第四十九条**　飞机、船舶、机动车、列车等移动污染源的污染物排放管理，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第五十条**　排污单位应当遵守安全生产规定，按照安全生产管理要求运行和维护污染防治设施，建立安全生产管理制度。  在运行和维护污染防治设施过程中违反安全生产规定，发生安全生产事故的，对负有责任的排污单位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  **第五十一条**　本条例自2021年3月1日起施行。 |